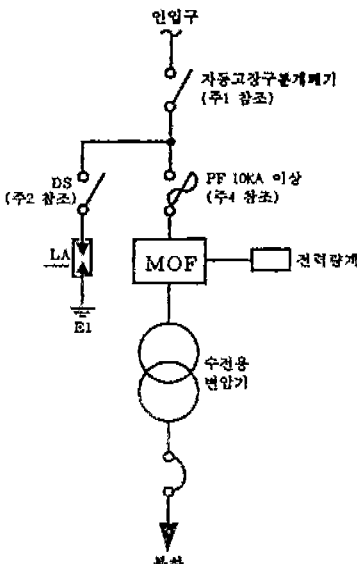


# 내선규정 개정내용 ⑧

-대한전기협회제공-

본 개정내용은 2001년 5월 15일 제 7차 개정된 내용이므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시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그림 7-3 특별고압수전설비 결선도</p> <p>【주 1】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주 2】 결선도중 점선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주 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kV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DC)이어야 한다.          【주 4】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 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 불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 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2.9kV-Y계</p>	<p>현행과 동</p> <p>【주 1】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주 2】 결선도중 점선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주 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kV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DC)이어야 한다.          【주 4】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 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 불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 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	--

<p>통에서는 CN-CV케이블 · 22kV-△계통에서는 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p> <p><b>【주 6】</b> DS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p>	<p><b>【주 6】</b> 지중인입선의 경우 22.9kV-Y계통에서는 CN-CV케이블 · 22kV-△계통에서는 CV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2.9kV-Y 지중인입선으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CNCV-W케이블(수밀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b>【주 7】</b> DS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p>
<p>[22,9kV-Y1000kV이하에 적용가능]</p>  <p>그림 7-4 특별고압수전설비 결선도</p> <p><b>【주 1】</b> 300kVA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대신 INT. Sw를 사용할 수 있다.</p> <p><b>【주 2】</b>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 용의 LA는 Disconnecter(또는 Isolator)</p>	<p>[22,9kV-Y1000kV이하에 적용가능]</p> <p>현행과 동</p> <p><b>【주 1】</b> 300kVA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대신 INT. Sw를 사용할 수 있다.</p> <p><b>【주 2】</b>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 용의 LA는 Disconnecter(또는 Isolator)</p>

現 行

改 正 案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 3】**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2.9kV-Y계통에서는 CN-CV케이블·22kV-△계통에서는 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 4】**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 COS(비대칭 차단전류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주 5】** 간이수전설비는 PF의 용단등의 결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계전기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 3】**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4】** 지중인입선의 경우 22.9kV-Y계통에서는 CN-CV케이블·22kV-△계통에서는 CV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2.9kV-Y 지중인입선으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CNCV-W케이블(수밀형)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5】**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 COS(비대칭 차단전류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주 6】** 간이수전설비는 PF의 용단등의 결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계전기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끝〉

現 行			改 正 案		
번호	건 명	관련번호	번호	건 명	관련번호
3-3	전동기의 규약전류치	305-1	3-3	전동기의 규약전류치	305-1
1. 3상농형 유도전동기의 규약전류치			1. 3상농형 유도전동기의 규약전류치		
출력(kW)	규약전류(A)		출력(kW)	규약전류(A)	
	220V용	380V용		220V용	380V용
0.2	1.8	0.95	0.2	1.8	0.95
0.4	3.2	1.68	0.4	3.2	1.68
0.75	4.8	2.53	0.75	4.8	2.53
1.5	8.0	4.21	1.5	8.0	4.21
2.2	11.1	5.84	2.2	11.1	5.84
3.7	17.4	9.16	3.7	17.4	9.16
5.5	26	13.68	5.5	26	13.68
7.5	34	17.89	7.5	34	17.89
11	48	25.26	11	48	25.26
15	65	34.21	15	65	34.21
18.5	79	41.58	18.5	79	41.58
22	93	48.95	22	93	48.95
30	<u>125</u>	<u>65.79</u>	30	<u>124</u>	<u>65.26</u>
37	<u>160</u>	<u>84.21</u>	37	<u>152</u>	<u>80</u>
45	190	100	45	190	100
55	230	121	55	230	121
75	310	163	75	310	163
90	360	189.5	90	360	189.5
110	440	231.6	110	440	231.6
132	500	263	132	500	263
<p>[비고 1] 사용하는 회로의 표준전압이 220V인 경우는 200V인 것의 0.9배로 한다.</p> <p>[비고 2] <u>신설</u></p>			<p>[비고 1] 사용하는 회로의 표준전압이 220V인 경우는 200V인 것의 0.9배로 한다.</p> <p>[비고 2] <u>고효율 전동기는 제작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작자의 기술자료를 참조할 것</u></p>		